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84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 의 자 : 김용태·이성권·서천호
김성원·이종배·우재준
김민전·김예지·배준영
정성국·송석준·조은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바, 지역 간 형평성 및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조의2 신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미활용 군용지”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u>미활용 군용지</u> ”란 「 <u>국방개혁에 관한 법률</u> 」 제5조에 따른 <u>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u>
<u><신 설></u>	제7조의2(<u>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u>) ① <u>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u> ② <u>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u>